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25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대상자 확대	3
2. 재선충 분리·분양신고 등 관리규정 및 벌칙 신설	7
3. 발생지 주변 산림관리 완화	14
4. 토석·토사채취, 채석 및 임목벌채에 대한 방제계획서 근거 마련 ..	1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17.

다. 회 부 일 : 2025. 1. 20.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제명령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감염성이 높아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추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

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 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4 신설).
- 다.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 라.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임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IV. 검토의견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대상자 확대

개정안은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및 수목의 판매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 ----- ----- ----- ----- ----- ----- <u>-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u> -----.
1. <u>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u>	1. <u>감염목등의 벌채명령</u>
2. <u>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u>	2. ----- <u>훈증</u> ----- -----

현행	개정안
3. 감염목등의 <u>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u>	3. ----- <u>양도·이동</u> ----- -----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 도구 등 <u>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u>	4. ----- ---- <u>등</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방제명령의 대상을 감염목등¹⁾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들 외에도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판매자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일반법인 「산림보호법」은 방제명령의 대상을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²⁾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 규정에 관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예방(豫防)하여야 한다.

2) 제24조(방제명령 등)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간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및 수목의 판매자 등에게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방제명령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안 제8조 제1항 각 호의 방제조치 내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현행법 규정형식과 유사하게 각 호마다 조치명령 대상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환경부도 사유 수목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산림관리자의 경우 방제조치(벌채, 소각 등) 명령을 받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하고, 수목에 대한 강제 처분권이 없는 산림관리자가 감염목등의 벌채, 소각 등 행위 시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방제명령 대상자에서 ‘산림관리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토양의 소독

제시하고 있음.

반면, 산림청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24조제3항에서도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거의 100% 고사하고 전염되는 속도도 매우 빨라,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하여 산림소유자 외에 관리자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를 방제명령 대상자에 포함할 것인지는 여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산림청 및 관계부처인 환경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재선충 분리·분양신고 등 관리규정 및 벌칙 신설

개정안은 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와 지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4(재선충 분리·분양신고 등) ①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선충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재선충의 분양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³⁾ 보관·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연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처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재선충의 분리·분양계획 신고 절차 및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③ (현행과 같음)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기관)은 재선충병 약제 개발 등을 위해 보관 중인 감염목등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을 분리하여 대학, 농약 제

3) 안 제10조의4제3항 중 “및 재선충병”은 삭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조기업 및 민간 연구소 등에 분양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 분양 내역(국립산림과학원→요청기관) 】

분양시기		분양요청기관	분양요청내용
년도	월		
총계		18건	
2022	계	6건	
	2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	소나무재선충 2플레이트
	2	제놀루션 그린바이오팀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9	성보화학중앙연구소	소나무재선충 2플레이트
	10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10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소나무재선충 10플레이트
	12	성보화학중앙연구소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2023	계	6건	
	4	제놀루션-GN	소나무재선충 6플레이트
	5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소나무재선충 10플레이트
	7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소나무재선충 10플레이트
	7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소	소나무재선충 10플레이트
	10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소나무재선충 10플레이트
	11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	소나무재선충 2플레이트
2024	계	6건	
	5	단국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소나무재선충 4플레이트
	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9	영남대학교 생명공학과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10	단국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소나무재선충 2플레이트
	10	스피진바이오	소나무재선충 3플레이트
	'25. 3 (*24.12월 요청)	경북대학교 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 2플레이트

자료 : 산림청

분리·분양된 소나무재선충이 잘못 관리될 경우 재선충병이 발생·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로 재선충 보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보관·관리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개정안은 재선충의 분리·분양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재선충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용 재선충에 관한 산림청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연구 과정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 및 그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야 하고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바, 유사한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대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⁴⁾

【 현행법 및 유사입법례 벌칙규정 】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현행법 제17조제2항 (벌칙)	<u>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u>	500만원 이하 벌금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u>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하거나 분양 받으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신고위반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페스트균, 탄저균, 에볼라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것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및 바이러스이므로 재선충 분리·분양 신고위반 등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u>연구기관의 재선충 및 재선충병 보관·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u>	
결핵예방법 제33조제1호 (벌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u>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u>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사 및 그 밖의 의료 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 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 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도 재선충 약제(치료제)의 연구개발과 이에 따른 재선충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0조의4에 따른 분리·분양에 관한 신고와 재선충 보
관·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의무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신고 및 지도·점검과 시정요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은 산림청장의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
고 수범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병원체 분리·분양신고에 관한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둘째, 안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연구기관’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재선충을 분양받은 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지도·점검 및 시정요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선충을 분리하는 자’와 제2항에 따른 ‘재선충을 분양 받으려는 자’의 경우 재선충 관리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분리·분양하는 자의 범위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셋째, 개정안은 신고 및 지도·점검에 대하여만 벌칙규정을 두고 안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항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 보관·관리하는 재선충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나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산림청은 ‘재선충을 분리하는 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등이, ‘재선충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대학, 농약 제조기업, 민간 연구소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음.

3. 발생지 주변 산림관리 완화

현행법은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립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립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 ----- ----- ----- ----- ----- -----학술연구 <u>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립 및 육림, 그 밖에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의 제거 등--</u>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산림청 행정지침)은 제9장 행정 절차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⁶⁾

그러나 산림청 지침을 근거로 선제적인 임목 제거를 수행하기에는 산림소유자 등 관계자들의 동의나 협조를 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제거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소나무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환경부는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로 인해 소나무 외에 모든 임목을 제거할 경우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 자연생태계 교란 및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산림청은 이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거 대상을 “임목”에서 “소나무류”로 수정할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IX. 행정절차

7.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산림관리

(1) 조림 및 육림

(나)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에서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의 금지 예외가 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은 다음과 같음. 다만, 산림청 또는 산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1)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

2)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조림 및 육림

3)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충 서식처를 제거하는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적절한 것으로 보임.⁷⁾

다만, 개정안은 “매개충의 서식처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의 제거”를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 문구의 뒤에 위치시켜 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개충의 서식처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의 제거”도 현행 법상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육림사업에 포함되므로, 안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을 “학술연구,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의 제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7) 재선충병은 감염되었더라도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몇 달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이를 ‘비병징감염목’이라고 하며, 비병징감염목을 고사목과 같이 제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산림청은 제거 대상을 ‘고사된 소나무류’로 한정하지 않고 ‘소나무류’로 하는 것이 재선충병 방제 원리에 부합한다는 설명임.

4. 토석·토사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에 대한 방제계획서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반출금지구역에서 토석·토사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신고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방제계획서 ⁸⁾ 등의 제출)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계획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산지 또는 산림에 소나무류가 없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소나무류 벌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제1

8) 안 제13조의2의 제목 중 “방제계획서”는 “방제계획서”의 오키로 보임.

현행	개정안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채취 및 제30조에 따른 채석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입목벌채 ② 제1항에 따라 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완료서”라 한다)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제계획서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완료서(이하 이 조에서 “방제계획서 등”이라 한다)----- ----- ----- ----- -----경우 -----.

현행	개정안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제계획서등을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방제계획서등 인-----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 -----방제계획서등----- ----- -----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⁹⁾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하는 경우 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전에 해당 산지를 전용·일시사용하

9)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려는 자에게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 행위의 경우 소나무류의 벌채가 수반되면 동일한 확산 위험이 있음에도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재선충병 방제의 효과성과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 등 현황 】

(단위: ha)

구분	2021	2022	2023
산지전용·일시사용	1,977.92	1,801.29	1,060.86
토석채취 허가·신고	153.59	207.51	129.48
입목벌채 허가·신고	3,538.88	3,694.66	2,075.28

자료 :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신고 대상지와 동일하게 토석·토사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 행위 시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가 포함된 벌채사업의 방제 시 관리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다만, 안 제13조의2제1항이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3문의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같은 항 중 “각 호의 행위”
는 각 호의 모든 행위를 뜻하여 개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법제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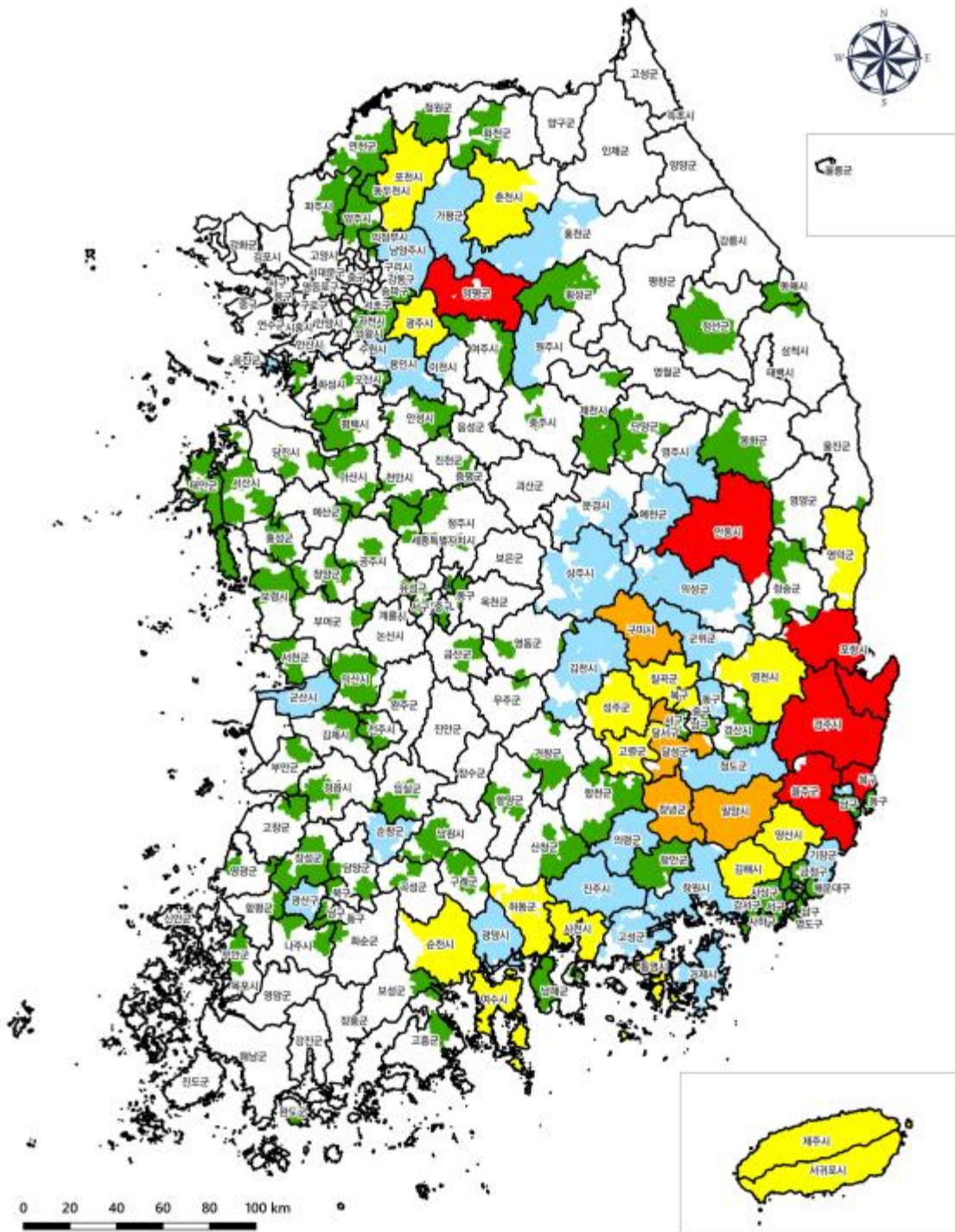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2. 전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 ('25.1월 기준)

시·도	시·군·구 수	행정동 수	행정리 수	반출금지구역(ha)
계	157	917	6,944	4,320,701
서울	4	15	-	5,008
부산	14	158	62	72,368
대구	6	49	84	113,787
인천	-	-	-	-
광주	3	16	-	26,370
대전	5	11	-	21,609
울산	5	43	116	95,848
세종	1	-	37	16,491
경기	21	178	794	609,513
강원	9	19	555	340,949
충북	7	2	214	130,185
충남	14	16	440	213,137
전북	12	117	474	200,207
전남	15	42	554	296,273
경북	21	84	2,103	1,251,886
경남	18	136	1,367	744,886
제주	2	31	144	182,184

3. 전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도 ('25.1월 기준)



극심	5만그루 이상	심	3만~5만그루	중	1만~3만그루	경	1천~1만그루	경미	1천그루 미만
	6		4		18		27		98

16개 시·도, 153개 시·군·구

1. 최근 3년간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또는 일시사용) 실적

(단위 : ha)

구분	2021	2022	2023
총계	1,977.92	1,801.29	1,060.86
지자체 계	1,951.66	1,774.24	1,045.1
서울	-	-	-
부산	26.00	42.00	13.00
대구	35.63	13.79	13.72
광주	0.45	1.70	0.33
대전	2.87	5.13	3.80
울산	58.06	132.82	73.12
세종	2.00	10.00	2.00
경기	859.00	578.00	276.00
강원	81.99	75.93	157.51
충북	6.70	6.40	3.80
충남	73.67	58.76	118.13
전북	10.97	15.69	13.59
전남	65.70	58.74	28.78
경북	421.38	280.60	170.80
경남	223.61	302.87	118.61
제주	83.63	191.81	51.91
지방청 계	26.26	27.05	15.76
북부청	2.02	2.50	1.50
동부청	-	0.17	0.17
중부청	0.61	9.94	0.72
남부청	15.26	9.09	6.13
서부청	8.37	5.35	7.24

2. 최근 3년간 반출금지구역 지정 이후 토석채취 허가·신고 현황

(단위 : ha)

구분	2021	2022	2023
총계	153.59	207.51	129.48
지자체 계	147.19	185.11	129.48
서울	-	-	-
부산	17.00	81.00	64.00
대구	-	2.70	-
광주	-	-	-
대전	-	-	-
울산	50.70	5.78	-
세종	0.00	-	-
경기	7.10	4.40	2.80
강원	0.00	9.80	-
충북	4.00	-	-
충남	12.46	19.10	6.00
전북	-	-	-
전남	1.70	13.80	5.20
경북	38.03	45.53	38.49
경남	16.20	3.00	12.99
제주	-	-	-
지방청 계	6.40	22.40	-
북부청	6.40	0.00	-
동부청	-	-	-
중부청	-	19.00	-
남부청	-	3.40	-
서부청	-	-	-

3. 최근 3년간 반출금지구역 지정 이후 입목벌채 허가·신고 현황

(단위 : ha)

구분	2021	2022	2023
총계	3,538.88	3,694.66	2,075.28
지자체 계	3,432.97	3,651.62	2,058.18
서울	-	-	-
부산	1,177.00	1,174.00	735.00
대구	26.59	40.49	9.32
광주	-	-	-
대전	-	-	-
울산	-	0.30	0.02
세종	-	-	-
경기	428.00	359.00	215.00
강원	9.20	882.21	136.57
충북	69.42	81.58	30.27
충남	177.03	164.42	118.81
전북	44.84	76.16	60.67
전남	62.77	114.32	68.28
경북	378.27	436.36	183.17
경남	1,059.85	322.78	482.90
제주	27.05	10.16	18.17
지방청 계	105.91	43.04	17.10
북부청	63.00	23.51	15.42
동부청	38.90	-	-
중부청	0.40	10.31	1.17
남부청	3.61	9.22	0.51
서부청	-	-	-